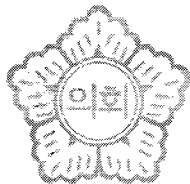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2018. 10. 29.)

검 토 보 고 서

검 토 안 건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일자리경제과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희옥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8년 10월 15일 (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9일 (금)

4. 관계법규

-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6.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7조)
- 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안 제8조 ~ 제14조)
- 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 ~ 제20조)
- 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21조 ~ 제27조)

7.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사항 없음

나.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8. 9. 13. ~ 10. 4.

2) 부패영향 평가 : 원안 동의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권고사항 반영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2018. 10. 11

8.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과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고,
-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 심화, 마을공동체 약화, 사회안전망 취약 등 각종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회복, 협동의 문화확산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은 물론 사회공동체 구성과 균형 잡힌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5개 자치구가 기본조례 및 활성화 지원조례 형태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 조례 제정으로 사업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면 개별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조직형태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법적근거 마련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 되는 바, 안 제8조 부터 제14조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과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 사업추진 시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 적정한 지원 범위와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임.

- 또한 개별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조정과 함께 조직별로 지원되는 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재정 지원금이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참 고 자 료

1.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구	제정현황
1	종로구	활성화 및 지원 조례(2016.6.)
2	중구	×
3	용산구	육성 및 지원 조례(2017.5.)
4	성동구	활성화 지원 조례(2015.7.)
5	광진구	×
6	동대문	육성 및 지원 조례(2017.11.)
7	중랑구	×
8	성북구	기본조례(2014.12)
9	강북구	활성화및지원 조례(2015.9.)
10	도봉구	기본조례(2015.10.)
11	노원구	×
12	은평구	기본조례(2015.5.)
13	서대문구	활성화 지원 조례(2015.10.)
14	마포구	×
15	양천구	×
16	강서구	활성화 및 지원 조례(2017.11.)
17	구로구	기본조례(2015.10.)
18	금천구	기본조례(2015.7.)
19	영등포구	육성 및 지원 조례(2015.12.)
20	동작구	활성화 지원 조례(2015.12.)
21	관악구	×
22	서초구	×
23	강남구	×
24	송파구	×
25	강동구	육성 및 지원 조례(2016.3.)
	서울시	기본조례(2014.5.)

2.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2018.8.31현재)

○ 사회적기업

계	인증	예비
47	25	22

○ 협동조합

구분	전국	서울시	마포구
조합수	12,594	2,998	189

○ 마을기업 : 8개 기업

연 번	기업명	소재지	주요사업 내용	전액시비(공모사업) (단위:만원)
1	㈜솔트카페	송문길 14, 영리동주민센터 2층(영리동)	마을카페 천일염 생산지 직거래	1차 4,000(2011) 2차 3,000(2012)
2	(사)여성청소년 미디어협회	모래내로 7안길 9 (성산동)	재활용 나눔가게 운영	1차 3,785(2012)
3	우리동네나무그늘 협동조합	백범로 113-1, 2층 (영리동)	마을공동체 카페 운영	1차 4,200(2013) 2차 3,000(2014)
4	마포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월드컵로 80,7층 (서교동)	취약계층 찾아가는 건강검진 맞춤형 건강운동 프로그램 운영	1차 3,980(2013) 2차 3,000(2017)
5	작은나무 협동조합	성미산로 21-1 (성산동)	성미산마을 공동체 카페	1차 4,000(2013) 2차 3,000(2014)
6	성미산좋은날 협동조합	성미산로 23(성산동)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유기농 더치커피 생산 판매	1차 4,600(2017) 2차 2,800(2018) 보증금 1억원(2013) 임대보증금 반환 (2018.8.)
7	문턱없는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성미산로 557, B101호(성산동)	형편이 어려운 주민 대상 밥상 공동체 운영	1차 5,000(2018) 보증금 1억원(2012) 임대보증금 반환 (2018.5.)
8	그리다 협동조합	동교로 185-6 (동교동)	(여성) 1인가구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통 공간 운영	보증금 1억원(2013) - 2017. 12. 보증금 반환

○ 자활기업 : 4개 기업

연번	기업명	주요사업 내용	주소	지원내역
1	그린카 서비스	전문세차 서비스	동교로3길 82, 1층	자활센터 운영비 보조: 2억 5백만원(국50:시25:구25)
2	맛을 만드는 사람들	출장 뷔페, 단체 도시락	월드컵북로 206, 2층	
3	청순이	전문청소 서비스	방울내로7길 37	자활센터 사업비 보조: 6천3백만원(기금)
4	클린하우징	전문청소 서비스	방울내로7길 37	

※ 자활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으며 자활기업 기반구축 지원 기관인 자활센터에 예산지원

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20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017.12)-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구분	사업내용	지원액
일자리창출	신규 일자리창출 목적의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4대보험료 포함)
전문인력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1인 최대 250만 원
사업개발비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	인증 : 최대 1억 원 예비 : 최대 5천만 원
혁신형사업	서울시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사업 지원	최대 2억 원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경제 인지도 제고 및 판로지원	국·시비 예산범위 내 자 치구 사업별 차등지원
사회보험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최대 50명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실적 : 23개 기업 686,139천원 지원

(2018. 8. 31. 현재)

구분	기업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지원형태
일자리창출	6개	월평균 18명	154,808천원	국비: 75%, 시비: 25%
전문인력	14개	월평균 16명	186,685천원	국비: 75%, 시비: 25%
사업개발비	9개	-	208,000천원	국비: 70%, 시비: 30%
사회보험료	8개	월평균 84명	83,846천원	국비: 70%, 시비: 30%
혁신형사업	1개	-	30,000천원	시비: 100%
지역특화사업	1개	-	22,800천원	국비: 70%, 시비: 30%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 예비기업 2년, 인증기업 3년 지원

사회보험료 : 인증기업 4년 지원(예비 사회적기업 해당없음)

4.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사업주체 :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민간위탁 : 센터장 1, 팀장 1, 직원 3)
- 사업기간
 - 1단계 : 2013. 6. ~ 2016. 5. (사회적경제 생태계사업단)
 - 2단계 : 2016. 6. ~ 2022. 5.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 '18년 예산 : 1억7,000만원(시비 1억4,000만원, 구비 3,000만원)
- 자치구 운영 현황

생태계사업단 운영 (1단계)	통합지원센터 운영 (2단계)	센터 설립
1년차 : 중구 2년차 : 강서, 종로 3년차 : 용산 ※ 4개 자치구	1년차 : 동대문 광진 동작 양천 영등포 2년차 : 도봉 3년차 : 구로 성동 강북 노원 강동 마포 4년차 : 성북, 금천, 은평, 관악 ※ 16개 자치구	'13년 : 은평, 성북, 영등포, 관악 '14년 : 노원, 양천, 동작 '15년 : 성동, 도봉 '16년 : 서대문, 용산 '17년 : 동대문, 금천 ※ 13개 자치구

○ 통합지원센터 지원예산 (단위: 만원)

구분	2016(1년차)		2017(2년차)		2018(3년차)		2019(4년차)		2020(5년차)		2021(6년차)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예산	15,000	2,500	14,000	3,000	14,000	3,000	10,000	7,000	9,000	7,000	8,000	8,000

※ 2019년 예산(3년차) : 1억7,000만원(시 1억4,000만원, 구 3,000만원)
3년차 : 2018. 6. ~ 2019. 5.(4년차 이후 예산은 추정액임.)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인큐베이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조사(상품, 생산력 등)
- 판로, 공공구매,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거래 지원
- 지역 의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업모델 개발

5. 관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